2014 년 임시헌법에 따른 국가개혁위원회

국가개혁위원회의
250 명 미만으로 구성된다. 이는국왕께서
국가평화질서회의가 제의에 따라 임명을 제가한다.

국가개혁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국가개혁위원회위원장 1 명, 부위원장 2 명으로 구성된다. (국가평화질서회의 의장이 국왕께 상신, 제가를 요청한다.)

선출 방식

국가평화질서회의가 11 개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을 임명함 (30 조 (1))

1. 정치
2. 국가행정
3. 법률 및 사법 제도의 공정성
4. 지방행정
5. 교육
6. 경제
7. 에너지
8. 보건 및 환경
9. 통신
10. 사회
11. 기타

선정된 후보자의 명단을 국가평화질서회의에 제출한다. (30 조에 (3))

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각 도별 행정구역의 위원을 구성하여 임명한다. 대상자는 그 지방에 거주지하는 자로 한다 . (30 조 (1))

대상자 구성 위원회 및 선정 기준은 관련 법에 따른다, 30 조(5)

선정된 후보자의 명단을 국가평화질서회의에 제출한다. (30 조에 (3))

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국가개혁회의의원을 250 명 미만으로 임명한다. 이들은 각 도별 행정구역 1 명씩 총 77 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합쳐서 모두 173 명 미만으로 구성된다. 위원이 구성되면 국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국왕께 상신하여 제가를 받는다.

자질 및 금지 자격

- 태국 출생 및 태국 국적 소유자, 35 세 이상인 자 (28 조)
- 금지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자. (8 조 (2) (3) (4) (5) (6) (7) (8) 및 (9) (29)
- 각 분야별의 실력과 지식을 갖춘 자. (30 조 (3))
- 국가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정부기관, 민간단체, 사회, 학술 및 직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자를 공정하게 선출한다.

자격만료

국가개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만료

- 사망 - 사직
- 28 조 혹은 8 조(2) (3) (4) (5) (6) (7) (8) 및 (9) 항 에 따른 자격 금지
- 12 조에 따라 국가개혁위원회의가 면직을 결정한다.
- 회의는 규정된 인원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대상자는 출석하지 않는다.

38 조에 따른 국가개혁위원회의 만료

- 규정된 기간 내에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심의하지 못한 경우.
- 국가개혁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경우.
- 국왕께서 헌법 개정안을 승인을 거부한 경우.

역할 및 권한

1. 국가개혁위원회 28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개혁의회의장 1 명, 부의장 2 명 미만 선출한다.
2. 29 조 규정에 따라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의 자격 만료를 판단한다.
3. 12 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 만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이 국가개혁위원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4. 27 조 규정에 따라 개혁을 하기 위하여 분석, 연구한 결과를 입법의회, 내각, 국가평화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에 제안한다.
5. 헌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결의 및 제안을 첫 본 회의 시작한 때로부터 60 일 이내에 헌법초안제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6. 회의를 참석한다.
7. 회의의 규정을 정한다.
8. 국가개혁위원회의에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킨다.
   - 8.1 32 조 (2) 규정에 따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 20 명을 임명한다.
   - 8.2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의 사직이나 결원이 발생하면 15 일 안에 충원해야 한다..
   - 8.3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내에 헌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만료된 경우 새로운 헌법초안제정위원회를 임명한다.
   - 8.4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내에 헌법안을 개정 못함으로써 만기된 경우 새 헌법초안제정위원회를 임명한다.
9.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개정한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가결한다.
   - 9.1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마무리한 헌법 개정안을 10 일 내에 심의 및 의견을 제시한다.
   - 9.2 국가개혁위원회의 의원들은 30 일 내에 헌법초안제정위원회 회장에게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를 제시할 수 있다.
   - 9.3 헌법초안제정위원회로부터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15 일 내에 본회의에서 가결 혹은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.
10. 헌법 개정안을 완료되었을 때 헌법과 관련된 법들의 개정 활동을 위해 국가개혁위원회는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1. 새 헌법을 공포되면 국가개혁위원회의 역할은 새 헌법에 39 조 규정에 따른다.

국회 하원사무처 2014 년 8 월 25 일